

獨逸의 法令審査基準表

(Prüftabelle für den Test von Gesetzentwürfen Checkliste Prüfung von Vorschriften)

朴英道* · 朴秀憲**

<p style="text-align: center;">◇ 차</p> <p style="text-align: center;">〈解 說〉</p> <p style="text-align: center;">= 獨逸의 法令審査基準表 =</p> <p>I. 聯邦政府의 法令審査基準表</p> <p>II. 聯邦公務員教育院의 法律草案의 檢索을 위한 審査基準表</p>	<p style="text-align: center;">레 ◇</p> <p>III. 함부르크州政府의 法令審査基準表</p> <p>IV. 라인란트-팔츠州政府의 法令審査基準表</p> <p>V. 聯邦內務省의 法令審査基準表</p>
--	---

〈解 說〉

최근 獨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現代의 立法의 質에 대한 증가하는 批判 (법률의 효율성침해, 법률의 인플레이현상, 집행기구의 팽창을 통한 관료화 등)은 國家機關으로 하여금 법률의 제정시 심도있는 審査의 必要性을 더욱 진지하게 요청하였고, 그 가운데 특히 必要性 및 效力審査에 대한 보다 強化된 目標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認識의 바탕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법률의 능력과 필요성에 관하여 制度化된 審査를 가능케하는 基準이 마련되어야 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에 대한 효력,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 비용면에 대한 효력 뿐만 아니

* 韓國法制研究院 責任研究員

** 韓國法制研究院 研究員

라 法律이 자신의 主目標와 일치하는 효력, 法律이 사정에 따라서는 자신의 固有한 目標基準에 위반할 수 있는 원치않았던 부수적 효과에 대한 효력, 法律이 다른 法律의 목표정립을 고려하여 중립적인가 또는 해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한 효력 등에 심사를 통하여 實際的 立法作業을 위한 도움으로서의 審査目錄을 작성하여 法律의 質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審査目錄은 聯邦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各州에서도 나름대로 獨自의인 審査目錄을 구비하여 법률이라는 도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審査目錄은 특별한 입법정책적 목표정립을 지니고 있으며, 입법의 기초과정과 입법학, 입법기술의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려는 내용은 獨逸의 立法審査基準表로서 그 가운데 聯邦의 法令審査基準表와 聯邦公務員敎育院의 法律草案의 檢索을 위한 審査基準表 및 함부르크州政府의 法令審査基準表, 라인란트-팔츠州政府의 法令審査基準表, 聯邦內務省의 法令審査基準表 등을 선정한 것이다¹⁾. 이들 이외에도 獨逸에서는 거의 모든 州에서 독자적인 審査基準表를 마련하여 立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연구를 진행하는 학자·실무가들도 나름대로의 審査基準表를 작성하여 입법작업에 즈음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獨逸 뿐만 아니라 스위스·오스트리아에서도 獨逸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法令審査基準表를 마련하여 입법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국가의 法令審査基準表에 대한 소개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獨逸의 경우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

= 獨逸의 法令審査基準表 =
(Prüftabelle für den Test von Gesetzentwürfen
Checkliste Prüfung von Vorschriften)

1) 이러한 法令審査基準表들은 Joachim Vollmuth, 「Prüffragenkataloge als Instrument der Bedarfs- und Wirkungsprüfung」, in: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Hrsg.), Praxis der Gesetzgebung, SS.178-199 ; Hans Schneider, Gesetzgebung, 2.Aufl., 1991, SS.426-428를 참조하여 번역·정리하였음.

I. 聯邦政府의 法令審査基準表

立法案에 대한 必要性, 有效性 및 理解性을 위한 審査質問
(Prüffragen zur Notwendigkeit, Wirksamkeit und Verständlichkeit von Rechtsetzungsvorhaben des Bundes)

1. 普遍的으로 당연히 提起되는 問題는 무엇인가
 - 1-1 무엇을 달성하여야 하는가
 - 1-2 規律要求는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 어떠한 根據가 제시되는가
 - 1-3 그에 비하여 현재의 事實 및 法狀態는 어떠한가
 - 1-4 어떠한 欠缺들이 확인되고 있는가
 - 1-5 예를 들어 經濟·科學·技術 및 判例 등 發展이 當面問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 1-6 關係人 및 해결가능한 實際 事例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 1-7 發生하는 것은 무엇이며,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 어떤 代案이 있는가
 - 2-1 問題分析이 무엇을 결과하는가 : 問題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要素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 2-2 추구하려는 目標가 어떠한 일반적으로 적합한 作用道具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대체가능한 標本作成으로 달성될 수 있는가
 - 2-3 어떤 作用道具들이 아래 觀點의 고려하에서 특히 最上의 것인가
 - a) 시민과 경제의 비용과 부담
 - b) 유효성(특히 관세보호, 목표달성의 정도와 개연성)
 - c) 공공예산을 위한 비용과 지출
 - d) 현존하는 규범의 존속과 계획된 프로그램의 효력
 - e) 부수효과, 사후효과
 - f) 수법자와 집행 주체에 대한 이해와 인용준비성
 - 2-4 어떤 手段을 취할 때 새로운 法規定이 회피될 수 있는가

3. 聯邦이 다루어야 하는가

3-1 州, 自治團體 또는 다른 國家的 機關들의 취급목표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존재하는 處分權의 도움으로 달성될 수 있는가

3-2 왜 聯邦議會가 활동해야 하는가

3-3 어느 범위까지 聯邦의 權限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4. 法律이 制定되어야 하는가

4-1 규율가능한 대상들이 法律의 留保(本質性理論)하에 있는가

4-2 다른 이유로 規律對象이 그렇게 중요하여, 그 規律이 議會의 留保에 머물러야 하는가

4-3 어떤 形式的 法律이 필요하지 않는 한; 規律이 하나의 法規命令으로 발해져야 하는가? 왜 行政規則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聯邦團體의 自治法規는 충분치 않는가

5. 지금 다루어져야 하는가

5-1 어떤 事案 및 聯繼性이 여전히 추구되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어떤 規律이 발해져야 하는가

5-2 왜 예견 가능한 變更 — 및 規律必要性 — 예를 들어 단계적인 효력발생 —이 여전히 기대될 수 없고 바로 그러한 立法節次에서 파악될 수 있는가

6. 規律範圍가 必要한가

6-1 그 草案은 無用한 프로그램원칙 또는 계획목표의 描寫로 부터 자유로운가

6-2 規律의 깊이(差別化와 詳細化)가 일반적인 파악(類型化, 概括化, 不確定 法概念, 一般條項, 裁量の 附與)을 통하여 制限될 수 있는가

6-3 예견가능한 變更들을 포함하여 세부사항들이 命令制定者(州 또는 聯邦)에 양도되거나 또는 行政規則에서 채택될 수 있는가

6-4 이러한 事例들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특히 보다 上位의 法을 통하여, 規律되는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

—變形된, 直接的으로 效力있는 市民法的 契約

—유럽공동체의 명령

—(연방명령에 대한) 聯邦法律

—(일반적 행정규칙에 대한) 法規命令

- 6-5 바로 그러한 規律對象에 관하여 소개된 技術的 規律이 있는가
- 6-6 이미 존재하는 어떤 規律들이 계획된 法規定에 의하여 언급되는가? 그 規律들은 없어질 수 있는가
- 6-7 具體的 變更의 必要性을 넘어서 절박한 修正의 動機에서 규율범위가 또한 심사되어지는가

- 7. 效力의 持續이 制限받을 수 있는가
 - 7-1 그 規律이 예견가능한 짧은 시간을 위하여서만 필요한가
 - 7-2 期限附 試驗規律이 주장될 수 있는가

- 8. 그 規律이 市民과 親熟하고 理解可能한가
 - 8-1 새로운 規律이 市民의 理解 및 認容準備와 일치하는가
 - 8-2 自由餘地 또는 協力義務에 대한 예견가능한 制限들이 왜 포기될 수 없는가
 - 금지, 허가- 및 고지의무
 - 관청에의 개인의 출두
 - 신청제출, 고시- 및 통고의무
 - 형벌 또는 벌금
 - 기타 부담들위의 制限들이 더 적은 負擔(허가유보를 지닌 금지 대신의 고지의무)을 통하여 보전가능한가
 - 8-3 請求權의 前提條件들 또는 官廳의 許可-/承認節次가 다른 법적 영역에서 그것들에 일치되지 않는가? 그리고 비용과 시간요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가
 - 8-4 關係人들이 用語選擇, 文章構成, 文章길이, 單一 規定의 길이, 分類, 論理, 縮約에 관하여 규정하는 規律을 이해할 수 있는가

- 9. 規律은 實行可能한가
 - 9-1 契約的·責任法的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市民法的 規律로서 충분하다면, 行政執行이 회피될 수 있는가
 - 9-2 새로운 官廳의 統制와 行政의 個別行爲(또는 법원의 간섭)가 왜 포기되지 않는가

- 9-3 선택된 規定들이 직접 준수가능한가? 그 規定들은 法律導入의 개별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적은 요구를 기대시키는가
 - 9-4 行政法的 命令－ 및 禁止規範들이 현재의 수단에 의하여 관철될 수 있는가
 - 9-5 節次와 權利保護에 관한 特別規定들이 포기될 수 있는가
－一般規定들로는 왜 충분치 않은가
 - 9-6 왜 a) 權限－ 및 組織規律들 b) 새로운 관청, 조안을 주는 단체 c) 協力留保 d) 報告義務, 職務上 統計 e) 行政技術的 先存(예, 事前印刷) 등이 포기될 수 없는가
 - 9-7 어떠한 官廳 또는 그밖의 機關들이 執行을 행해야 하는가
 - 9-8 어떠한 이익다툼들이 執行主體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가
 - 9-9 執行主體들에게 필요한 作用的 餘地가 歸屬되는가
 - 9-10 執行主體들/執行官廳들의 의견이 어떻게 규율목적의 명확성 및 執行委任으로 되는가
 - 9-11 계획된 규율이 執行主體의 참여하에서 먼저 심사되어지는가
－왜 그렇지 아니한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는가
10. 費用과 有用성이 適切한 關係에 있는가
- 10-1 受範者 또는 그밖의 關係人의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되는가
 - 10-2 추가적 비용부담이 受範者－특히 소규모 중간 기업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될 수 있는가
 - 10-3 聯邦, 州 및 自治團體들의 예산을 위하여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어떠한 보증가능성이 추가비용에 존재하는가
 - 10-4 費用－有用性－調査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가
－왜 그렇지 않은가
－어떠한 결과를 그것이 초래하는가
 - 10-5 어떠한 방법으로 效力, 費用 및 경우에 따라서 효력발생 이후의 規律의 附隨效果가 조사되는가

II. 聯邦公務員教育院(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의 法律草案의 檢索을 위한 審査基準表 (Prüftabelle für den Test von Gesetzentwürfen)

1. 目標定立

- 1-1 目標은 어디에서 由來하며(發生, 結果影響), 規律은 필연적인 사실인가
- 1-2 規律을 통하여 明確히 目標가 達成될 수 있는가
- 1-3 目標定立이 실제적이며, 諸目標의 達成이 가능한 한 提示될 수 있는가
- 1-4 目標은 上位段階의 目標定立(憲法, 政治的 行爲優先權)과 일치하는가
- 1-5 同等段階의 目標定立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가
- 1-6 기존의 目標定立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變換한다면
 - a) 上位目標가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 b) 동등한 단계의 다른 目標定立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 c) 예상되는 反發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2. 必要性

- 2-1 規律의 必要性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것을 明確히 조사하였는가
- 2-2 현존의 목표가 法規定의 일관된 집행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가
- 2-3 國家的 法律을 통해서만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가 또는 다른 방법을 模索할 수 있는가
- 2-4 規律을 통한 目標實現을 위하여 그 到達範圍를 제한하고, 또한 細分化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인가
- 2-5 精選된 領域(法律, 行政命令)을 통한 規律을 행할 수 있는가? 또는 下位編成分野를 통한 規律은 충분한가

3. 適合性

- 3-1 規律適合성에 대한 근거와 채용근거를 明確히 조사하였는가
- 3-2 規律內容이 적합하고, 達成하려는 目標가 획득될 수 있는가
- 3-3 代替案이 가능하고, 그것이 더 적합하고 또한 目標를 達成할 수 있지 않는가
- 3-4 規律의 부수적 결과가 야기되는가, 達成하려는 目標 또는 정선된 目標 기타

동등하게 정립된 規定의 성취가 阻害되지 않는가

4. 實用可能性

- 4-1 規律은 이해가능하며 目的에 적합하게 構築되었는가
- 4-2 法律規定을 통한 제시가 필요최소한도로 국한되고 또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 4-3 規律이 충분한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執行에 있어서 裁量權行使 및 不確定 法概念의 채용에도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4-4 經過措置에 대한 規律이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4-5 規律이 객관적으로 국가기능의 전개로 이해되고 있는가? 또한 특별히 조직적인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 4-6 執行管轄이 공정하며 또한 各州間의 협력의 필요가 명백히 모색되었는가
- 4-7 실제의 貫徹에 있어서 이전의 觀點에 대한 고려없이 행하여지지 않았는가
- 4-8 法案起草에 自動化의 可能性은 제시되었는가
- 4-9 舊法으로 부터 新法으로의 經過가 명백히 규율되었는가

5. 有用성과 費用

- 5-1 規律의 實現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고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였는가
- 5-2 施行에 필요한 人員은 준비되었는가
- 5-3 規律을 통하여 浪費가 초래되거나 적절한 관계에서 기대되는 實益이 존재하는가
- 5-4 規律이 다른 行政領域에서 바라지 않은 負擔을 초래하지 않는가
- 5-5 規律이 장기간에 걸친 현저한 費用上昇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6. 市民에 對한 親熟度

- 6-1 規律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 6-2 行政廳의 決定에 市民의 參與可能性이 導出되었는가
- 6-3 市民이 義務를 履行하는데 있어서 交付에 대한 說明, 當局의 仲裁, 情報의 提供 등에 부적절하거나 무조건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았는가

III. 함부르크州政府의 法令審査基準表

法令의 目標, 效力 및 實現可能性의 完成을 위한 審査目錄
(Ziele, Auswirkungen und Durchführbarkeit von
Vorschriften, Fragenkatalog zur Bearbeitung von
Vorschriften)
Senatsamt für den Verwaltungsdienst, Hamburg 1975

A. 目標定立

1. 法令이 達成하려는 目標가 무엇인가
2. 目標定立이 上位等級의 目標定立을 실현하는 것인가? 또한 다른 同位等級의 目標定立과는 충돌하지 않는가
3. 代案的 目標概念을 고려한다면,
 - a) 규정되어 있는 目標範圍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가
 - b) 다른 目標圈域을 통하여 좀더 유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B. 市民에 대한 認知度

4. 代替possible한 費用으로 行政의 市民에 대한 規律關係가 市民에게 가장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5. 情報提供義務 또는 類似한 義務를 통하여 市民에게 부적합한 부담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6. 行政決定에 있어서 市民의 참가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는가

C. 行政上的의 協力者를 통한 成就

7. 協力者의 個人的 社會的 慾求의 充足에 영향을 주었는가
8. 自己責任의 行爲 또는 協力者의 參加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도출하였는가
9. 相異한 慾求에 유리한 효과를 지닌 代替的 解決策을 고려하였는가
10. 協力者의 作業動機가 그 規律를 통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D. 有用성과 費用

11. 規律에 드는 費用이 의욕된 有用성과 적합한 관계에 있는가

12. 그 規律이 어떻게 有用性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지향할 수 있는가
13. 그 規律에 어느 정도의 費用이 要求되는가

E. 人力準備와 組織

14. 필요한 人力이 준비될 수 있는가
15. 그 規律이 現存하는 組織의 範圍內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特別한 組織上 措置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예상되고 있는가
16. 管轄權의 根據附與 또는 變更이 必須的인가
17. 其他 上部組織上의 決定이 必須的인가
18. 經過規定을 어느 정도까지 두어야 그 시행이 준비될 수 있는가
19. 經過規定의 시행에 있어서 既得權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가(그 규정의 소개 내지 조치의 실현)

F. 行政實際的 實現可能性

20. 내용적 관점에서 그 規律의 실제적 실현가능성에 반대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가
21. 施行令과 施行規則이 필요불가결한가
22. 표현방식이 명확하고 실용적인가
23. 표현방식이 문법적으로 적합한가
24. 規律이 자동적으로 정당하게 파악되고 있는가

IV. 라인란트 - 팔츠州政府의 法令審査基準表

法令의 簡素化를 위한 審査目錄 (Fragenkatalog für die Rechtsvereinfachung) Landesregierung Rheinland-Pfalz
--

1. 法令의 必要性

- 法令의 目標定立이 여전히 要求되고 있는가
- 法令의 目標定立이 단지 국가행위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가

- 政治的 請願, 公的 發議, 機關 및 團體와의 協력을 통하여 法的 規律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가
 - 規律로 인하여 생활영역에 대한 自己規制가 방해되는가
 - 法的 規律이 市民의 形成의 自由를 촉진하는가
 - 法的 規律에 대한 憲法上의 根據가 존재하고 있는가
2. 規律의 種類, 範圍 및 程度(규율에 설정된 행동영역의 수와 강도)의 必要性
- 本文의 範圍에 대한 縮小가
 - 규율구성요건들의 포기
 - 단순한 정식화
 - 일반적 규범화
 - 행정기술적 명분에 대한 법적 규율의 포기를 통하여 가능한가
 - 規律의 種類, 範圍, 程度가 市民에게 이익이 되는가
 - 市民이 情報提供責務 또는 類似한 協力義務를 담당함으로써 부당하게 負擔을 받지 않는가
 - 行政上 決定에 대한 市民의 參與可能性이 도출될 수 있는가
 - 法治國家的 必要性 - 특히 平等原則 - 을 고려하여 세목적인 규율의 완화도 가능한가
 - 決定의 欠을 예방하고 司法的 統制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완화된 規律程度로도 충분한가
3. 그 規律은 理解可能한가
- 規律이 明確하고 表面上 理解可能한가
 - 法令이 명백하고, 포괄적이면서 모순없이 정돈되어 있는가
 - 委任規定에 불필요한 전문적 표현이 내포되어 명확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 規律에 통일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가? 그 規律이 해석상의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用語上의 새로운 文句를 내포하고 있는가
 - 規定이 다른 法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4. 그 規律이 意圖하려는 效力이 達成될 수 있는가
- 문제가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광범위한가

- 規律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떤 基準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
- 그 規律이 市民의 權利와 義務에 반대되는 것으로 향하고 있는가
- 그 規律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가지는가

5. 그 規律이 마찰없이 貫徹될 수 있는가

- 節次의 持續과 費用이 대체가능한가
- 委任 및 脫集中化의 가능성은 없는가
- 標準化(정식화, 도식화로 인한 경과 등)의 정도가 市民에게 부담이 되는가

V. 聯邦內務省의 法令審査基準表

아래의 設問에 내포되어있는 項目들은 市民과 行政과의 관계에 관한 法令(법률·명령·행정규칙·준칙·모든 종류의 강령 등)에 관한 審査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主要項目은 規律의 客關性 뿐만 아니라 節次適合性의 領域과도 관련될 수 있다. 規律의 客觀的 領域에 관해서는 個別的인 利害關係에 具體的이며 確定的으로 規律될 수 있는 方案보다 간결하고 탄력성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明確한 規律이 市民의 이익과 매우 일치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특히 다양하게 제기된다. 이것은 一般的 先例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단지 오히려 個別的 境遇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政治的 目標가 國家的 行爲를 통해서만 達成될 수 있는가
 - 1-1 어떠한 政治的 目標定立이 問題의 解決과 직결되는가
 - 1-2 政治的 目標定立에 따른 國家的 行爲가 필수적인가
 - 1-3 政治的 目標定立에 公的 課題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수행이 달성될 수 있는가
 - 1-4 私人 또는 間接的인 公的 業務의 間接的 遂行者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러한 讓渡가 規律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2. 國家的인 影響力 判斷에 多樣한 可能性을 惹起하였는가
 - 2-1 問題에 대한 代替的 解決策을 둘러싸고 어떠한 고려를 하였는가
法規를 기피하는 데 대한 規制로서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가
 - 2-2 어떤 法規를 통하여 規律을 위반할 수 없도록 하는 憲法的 또는 그밖의 前提

가 있는가

- 2-3 政治的 請願, 公開的인 運動 등을 통하여 規律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가
- 2-4 問題의 症勢(징후)보다는 原因을 평가하는 해결책이 있는가
- 2-5 國家給付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이 모색될 수 있는가

3. 規律의 位置가 正當히 選擇되었는가

- 3-1 規律의 位置가 法體系上의 基盤에서 볼 때 事項의으로 正當한가
- 3-2 市民과의 관련에서 그 規律의 실천이 마찰이 없고, 費用도 저렴하게 보장 되도록 그렇게 위치가 선정되었는가

4. 規律의 強度가 適節한가

- 4-1 規律이 누구에게 直接的으로 適用되는가(시민 또는 행정기관), 그 規律이 受範者를 의식하고 구성되었는가
- 4-2 生活事案이 法律, 命令 및 行政規則의 順으로 規律되는가
- 4-3 그때 그때의 規律 및 規律意圖가 構成要件上의 具體化 및 明確化程度, 規律目的과 規律種類(法律, 命令, 行政規則)에 비추어 적절한가
- 4-4 不確定 法概念을 좀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4-5 그때 그때의 規律과 規律意圖가 法的 效果 및 代替的인 國家作用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또는 현재 확정된 것을 固定化할 수 있는가
더 많은 決定 및 選擇裁量이 부여될 수 있는가
- 4-6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을 통하여 법률상 허용된 裁量餘地를 특별히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가
- 4-7 法規와 法規內部間의 체계에 대한 향상된 이용을 통하여 지나치게 詳細規律을 회피할 수 있는가
法律의 概括的인 明確化로 지나치게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세부적인 규율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一般的 및 特別한 부분에 法規를 정리함으로써 지나치게 詳細規律을 회피할 수 있는가
- 4-8 特殊한 規律을 一般的 規律에 비하여 上位에 위치할 이유가 있는가

5. 規定되고 있는 規律이 期限附로 될 수 있는가

- 5-1 정해진 規律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秩序圈域으로 설정하여야 하는가

- 5-2 實際的 問題의 解決에 중점을 두어 調整이 가능하거나 또는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변경되는 것에 대한 解決策이 존재하는가
 - 5-3 規律의 效力의 持續을 制限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期限의 確定없이 規律의 再檢討를 미리 예견하는 것이 더 合目的인가
 - 5-4 規律의 效力發生時 法的 效果가 즉시 전범위에 걸쳐 발생하는가, 또는 시간적으로 段階化된 規律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市民의 負擔이 시간적인 단계에서 명확하게 되거나 다시 해제될 수 있는가
 - 5-5 그 規律이 쓸모없게 되려면 어떤 前提條件이 발생하여야 하는가
6. 規律의 明確性이 保障되는가
- 6-1 구율된 法的 素材가 判決 및 文獻에서 明確히 언급된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法的 概念이 확정되어, 어느 정도까지 그 정의된 개념을 類推適用 할 수 있는가
規律에 있어서의 모든 개념이 통일적으로 사용되는가
 - 6-2 類似한 法領域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용되는 專門用語로 환원될 수 있는가
 - 6-3 어떠한 原因으로 부터 個別事案의 해결을 지향하여 행해지는 規律(處分的 法律)의 경우 그것이 가능한 한 同等한 效力을 가지도록 고려하였는가
 - 6-4 法規上의 概念適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豫測診斷的 決定이 필요한가 그러한 진단, 예를 들면 어떤 제안자의 規律의 明確性의 必要性에 대한 問題 提起가 필수적으로 가치있는 요소를 지향하고 있는가
7. 規律이 充分한 彈力性을 提示하는가
- 7-1 신중하지 않고, 비교할 수 있는 集團群과 미리 예견 할 수 있는 未來事案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一般的인 規律이 가능한가
 - 7-2 法的 質的인 面の 減縮과 同意必要性의 廢止를 통하여 規範의 變化可能性이 完化될 수 있는가
8. 規律이 市民과 行政에게 理解와 統察이 가능한가
- 8-1 方法論的 및 專門的인 觀點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가 되는 平易한 用語選擇 이 행하여 졌는가
 - 8-2 規律이 明確하고 含縮性있는 文章으로 構成되었는가
 - 8-3 規律이 모순없이 構成되고, 一目瞭然하게 배열되었는가

- 8-4 規律 그 자체가 상호 이해되고 있는가
- 9. 規律의 目標, 內容, 效力 및 實行이 市民에게 充分히 周知되고 있는가
 - 9-1 어떠한 情報提供措置들이 필요한가
 - 9-2 情報提供措置를 위한 責任과 權限이 명확하게 確定되어 있는가
 - 9-3 情報提供措置들이 適時에 준비되었는가
 - 9-4 市民에게 특히 節次規律과 그 節次規律에 당연히 참가하는 權利에 관하여서도 충분히 告知하였는가
- 10. 規律이 마찰없이 實行될 수 있는가
 - 10-1 規律의 발동에 있어서 規律의 실행에 필요한 行政能力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고려되고 있는가
 - 10-2 規律에 대한 行政上 執行에 곤란성과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 10-3 執行에 수반한 문제가 假想模型 또는 圖上計劃을 통하여 인식가능한가
 - 10-4 規律의 實行에 관하여 관련 이익대표들 또는 단체로 부터의 의견이 제시되었는가
 - 10-5 實行된 規律에 어떠한 異議申請, 裁判, 監督節次에 관한 對象이 존재하는가
 - 10-6 行政上 執行에 즈음하여 目標相互間의 갈등이 인식될 수 있는가? 즉, 規律의 實現時 다른 보호가치있는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가
 - 10-7 規律을 변경할 때 執行問題가 相應하는 고려를 발견한다는 것이 보장되는가
 - 10-8 規律이 준수되는지 또는 規律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준수가 통제가능한가
- 11. 權限-, 組織-, 權利救濟規律이 事項으로 正當한가
 - 11-1 權限規律이 필요하고 事項으로 정당하게 형성되었는가
 - 11-2 規律에 留保되어 있는 監督權(適法性 監督, 合目的性 監督, 許可留保, 例外的 承認)이 필요하고 事項으로 정당하게 형성되었는가
 - 11-3 相當한 市民의 參加가 예견되는가
 - 11-4 州/自治的 管轄區域團體에 대하여 충분한 形成의 自由가 귀속되는가

- 11-5 一般的인 行政内部的 官廳에 의하여 또는 特別官廳(특별행정)에 의하여 더 잘 규율이 실천되는가
 - 11-6 行政節次에서 市民의 權利가 충분히 명백하게 정의되는가
 - 11-7 權利救濟手段이 事項的으로 정당하게 규정되는가
12. 規律로써 效力이 發生되는가 또는 期待할 수 있는가
- 12-1 規律의 事實的 效力에 관한 敎示가 주어진 지침이 발견될 수 있는가
 - 12-2 規律이 목적으로 삼는 效力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한 다른 근거가 존재하는가
 - 12-3 規律이 상대방 및 관계인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가
얼마나 많은 市民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범위로 規律을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報告가 있는가
13. 費用과 有用性이 相當한 關係에 있는가
- 13-1 規律의 有用性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어떠한 價値, 目標, 尺度와 要素가 이것을 위하여 규정되는가? 直接的 有用性 이외에 間接的 有用性도 고려되었는가
 - 13-2 性質上 및 또는 量的인 비교척도가 有用性規定을 위하여 발견될 수 있는가
이것이 화폐단위로 가능한가
 - 13-3 특히 人的 手段과 物的 手段에 있어서 직접적 비용(예산지출 뿐만 아니라)은 어떠한가
 - 13-4 제 3자에 있어서 발생하는 간접적 비용, 즉 效力이 고려되었는가
 - 13-5 市民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規律이 어느 정도까지 존재하는가